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최기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82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5일

발 의 자 : 최기찬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상진, 김생환, 김호평,
양민규, 이호대, 전병주,
최 선, 추승우, 홍성룡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사는 독재와 절대 권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변혁을 이끌어 온 자랑스러운 역사로서,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의는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계승·발전되어야 함.
- 그러나 민주화운동사는 교과 편제상 최후반부에 배치되어 학기말에 교육이 이루어져 체계적인 학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.
- 이에 내실 있는 민주화운동사 교육을 통하여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의 계승·발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학교민주시민 교육에 광복 이후 독재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·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의 역사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담고자 함(안 제5조제7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헌법」, 「교육기본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광복 이후 독재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·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의 역사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)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제5조(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)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<u>7. 광복 이후 독재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. 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의 역사</u></p>